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0(금)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8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5. 2. 1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 3일 부여(안 제16조제4항)
- 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안 제16조제5항)
- 다.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6조제6항)

- 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10일 연장하여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로 조정(안 별표 5)
- 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 5)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휴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비 고
개정	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	○ 5세 이하 →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24개월 동안 사용 → 36개월 동안 사용	안 제16조 제5항
		시간외근무 명령가능	○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모성보호시간 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육아시간 문구 삭제)	안 제16조 제6항
	경조사 휴 가	휴가일수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상(배우자 포함) : 1일 → 3일	안 별표 5
신설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 3일 부여	안 제16조 제4항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운영 현황 (붙임 참조)

-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 5개구 운영 중(2025. 5. 21.기준)
 - 노원구 : 3년이상 5년미만 재직자(3일)
 - 도봉구, 영등포구, 중랑구 : 1년이상 5년미만 재직자(3일)
 - 관악구 : 시보해제 공무원(1일) * 개정중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타 자치구 운영 현황 1부. 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

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

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

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0., 2024. 7. 2.>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붙임 2

타 자치구 운영 현황 비교

구분	자 치 구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상 (형제자매의 배우자상 포함)
1	서울시	미부여	형제자매상 (3일) 형제자매의 배우자상(1일)
2	강남구	미부여	3일
3	강동구	미부여	3일
4	강북구	미부여	3일
5	강서구	미부여	3일
6	관악구	1일(시보해제 공무원) *개정예정	3일
7	광진구	미부여	3일
8	구로구	미부여	3일
9	금천구	3일(1년이상 5년미만) *개정예정	3일
10	노원구	3일(3년이상 5년미만)	3일
11	도봉구	3일(1년이상 5년미만)	3일
12	동대문구	미부여	3일
13	동작구	미부여	3일
14	마포구	미부여	3일
15	서대문구	미부여	3일
16	서초구	미부여	형제자매상 (3일) 형제자매의 배우자상(1일)
17	성동구	미부여	3일
18	성북구	미부여	3일
19	송파구	미부여	형제자매상 (3일) 형제자매의 배우자상(1일)
20	양천구	미부여	3일
21	영등포구	3일(1년이상 5년미만)	3일
22	용산구	미부여	3일
23	은평구	미부여	3일
24	종로구	미부여	3일
25	중구	미부여	3일
26	중랑구	3일(1년이상 5년미만)	3일